

가정상담

9

2018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통권 421호

●●
법률구조를 통한
법률복지사회 구현
우리 사회의
모든 가정과 함께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SNS

트위터▷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지난 8월 27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재교육을 겸한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관련기사 24면)



8월 28일 본소 객배희 소장이 담당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과목 「리걸클리닉Ⅱ」의 개강 수업이 본소에서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24면)

4• 이 달의 메시지

6• 특집 | 유해인도 기획소송

8•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㉓

12• 가정폭력상담실

16• 인터넷 상담

17• 좋은 책

밤이 선생이다

18• 결혼과 인생(187) 만화일기

한 패 _ 장차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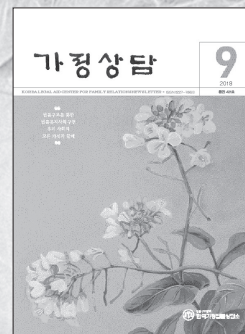
19• 임상실습 소감문

24• 상담소 소식

26• 지부 소식

28• 상담통계

29• 백인변호사단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제주 약천사 유채꽃〉

이 달의 메시지



아직도 남은 호주제의 잔재, 여성 차별을 넘어서야

부성강제조항의 개정과 유해인도소송에 부쳐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법률구조 사업과 더불어 상담소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가족법개정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담소는 창설 이후 주도적이고 지속적인 가족법개정 운동을 통해 부부·남녀평등을 위해 14차례의 가족법 개정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2005년에는 남녀·부부차별의 근간인 호주제 폐지라는 거대한 과업을 완수한 바 있습니다. 호주제 존치론을 주장하던 이들은 호주제가 폐지되면 전통과 미풍양속이 모두 사라지고 우리 고유의 가족제도가 붕괴될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현재 우리의 가족제도와 가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코 호주제가 아님을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2008년 종래의 호주제에 기반을 둔 호적제도를 대체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어 정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주제의 한 축이었던 민법상 부성강제주의는 2005년 민법 개정 당시 부성주의 원칙으로 일면 완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부성 승계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의 성(姓)을 결정하는데 있어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여성과 남성,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법적으로 차별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성평등 이념과 가족 복리 구현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상담소에서는 일찍부터 이러한 현실에 주목하여 이에 문

제의식을 가지고 이미 지난 2013년 ‘자녀의 성 결정에 부부평등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고 이어 올해 5월, 창립 62주년 심포지엄으로 ‘자녀의 성(姓), 강제에서 원칙을 넘어 합의로’를 개최하여 부계성본주의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특히 상담소에 참관이나 실습을 위해 방문한 초중고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에게서 성(姓)과 관련하여 “왜 꼭 아빠의 성을 따라야 하나요?”와 같은 질문이나 문제제기가 많은 것은 개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 남녀차별이나 부모차별이라는 면에서 이미 성이라는 것의 개념이 과거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을 차별하고 어머니를 차별하는 민법 781조와 관련 민법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합니다. 상담소는 지금까지처럼 가족법개정 운동의 차원에서 이 법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여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부성강제조항의 개정과 함께 상담소에서 여성 차별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유체인도 소송입니다. 지난 해 말 상담소를 찾은 내담자의 사연에서 비롯되어 현재 지방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지난 8월 3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이 사안은 궁극적으로 지난 2008년 11월 20일 대법원 선고 22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제사주재자 결정 및 이에 따른 유체인도 등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사주재자에 대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 이 판례는 가부장적 사고와 관습, 남계혈통 위주의 관행과 제도, 법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라는 관습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여기에서 전부 논의할 것은 아니고 이 사안의 쟁점은 그것을 누가 행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남 아니면 장손자 그리고 아들이 없는 경우 장녀라는 규정은 이미 오래전 폐지된 호주제가 내포하고 있는 내용 그 자체입니다. 호주제가 폐지된 후에 이러한 판례가 인용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 이후로도 이미 십 여 년의 시간이 흘러 21세기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어 가고 있는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불합리하고 전근대적인 판결과 관련하여 이제라도 여성 차별, 어머니와 딸에 대한 차별을 넘어서는 올바른 판례를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경구를 떠올려봅니다. 숲을 보아야 할 때가 있고 나무 한 그루에 집중해서 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한 평등의 상태는 없을 지도 모릅니다. 다만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사회, 그리고 노력하여 변화가 가능한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상담소는 사회상의 변화, 발전과 더불어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헌법 제11조가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하여 ... 차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현실에서 구현 되도록 모든 차별에 반대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상담소, 유해인도 기획소송 대법원 상고*

대법원 2008.11.20. 선고 227다 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제사주재자에 대해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망인의 장남(장남이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다.

본소는 지난 해 말 상담 과정에서, 사망한 남편의 유해인도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기획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 3일 유해인도와 관련하여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였다. 진행과정 및 변호인단은 아래와 같으며, 상고이유 요약서를 함께 게재한다.

소송 진행 및 결과

2017가합1*** 유해인도

2017년 11월 24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민사부에서 변론종결

2017년 12월 22일 판결선고 결과 기각

항소심

2018나2***** 유해인도

2018년 5월 2일 서울고등법원 제37민사부에서 변론종결

2018년 6월 20일 판결선고 결과 기각

대법원 상고

2018년 8월 3일

변호인단

김민선, 황현정(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이명숙(나우리 법률사무소)

배인구(법무법인 로고스)

천정환(법무법인 현정)

김상훈(법무법인 바른)

* 지난 8월호 가정상담(통권 420호) 상담소 소식 부분 참조

상고이유 요약서

사 건 2018다248626 유해인도
원고(상 고 인) 김** 외 2명
피고(피상고인) 재단법인 ** 외 1명

원심은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① 시체·유해도 민법 제1008조의 3에 따른 제사용 재산으로서 제사주재자에게 귀속되며, ②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이,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① 2005년 화장률(52.6%)이 매장률을 앞선 이후 2016년에는 82.7%가 화장에 의한 장례 방식을 택하는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장은 더 이상 보편적인 장례방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사용 재산, 즉 분묘와 유체의 귀속권자를 일치시킬 필연성은 사라졌으며, ②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장기등 기증의 요건으로 가족·유족의 동의 또는 거부 의사 없음을 들고 있는데, 그 동의권자 등을 정하는 순서가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순서와 괴리되어 있고,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분묘의 설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유골 등의 존재가 남아 있는 한 그 귀속이 정하여져야 하므로, 유골의 귀속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유지될 수 있는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귀속에 따르도록 할 이유는 없으며, ④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에 대한 이장의 요건으로 망인의 장남 이외에 생존 배우자와 자녀들의 동의를 요하고 있는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 50690 판결을 보면, 유해는 제사주재자인 장남에게 전적인 처분 및 관리 권한이 있는 일반적인 제사용 재산과 그 성격상 구별되므로, 유해를 제사용 재산으로 판단한 원심은 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또한 ①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적장자, 적손, 중자, 서자, 중손, 서손의 순서로 제사상속인이 되는 종래의 관습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해 제사주재자가 정해져야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망인의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됨이 조리에 부합한다고 하였으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용 재산 및 제사주재자의 본질에 대한 고찰 없이, 막연히 “장남 내지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등한 조건과 지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자 일반적인 사회통념”이라면서 단순히 관습의 일부로 남아 있는 현상을 조리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이를 근거로 삼은 잘못이 있으며, ②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민법 또한 이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여성에게도 종회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는 등 우리 사회의 기본이념 및 법질서가 변화되었는바, 장남을 우선시키는 종래의 관습은 더 이상 현재의 관습과 사회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③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 제11조 제1항 및 제36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④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해태하여 헌법에 위배됩니다.

기/획/연/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⑧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민국 법률구조의 역사**

여성법률상담소에서 가정법률상담소로

1976년 4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익법인이 됨

12월 여성백인회관 준공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로 문을 연 상담소는 창립 10주년이 되던 1966년 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가족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위한 인권기관으로 정착하였다. 다시 10년이 흐른 후 상담소는 오늘의 이름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로 이름을 바꾸고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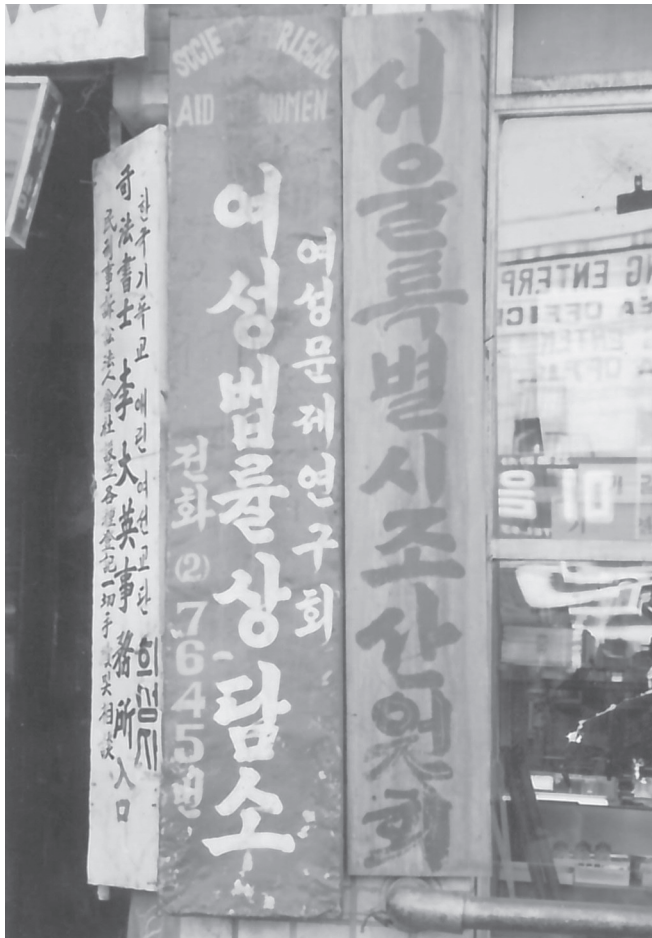
여성백인회관 신축 (1)

백인회원의 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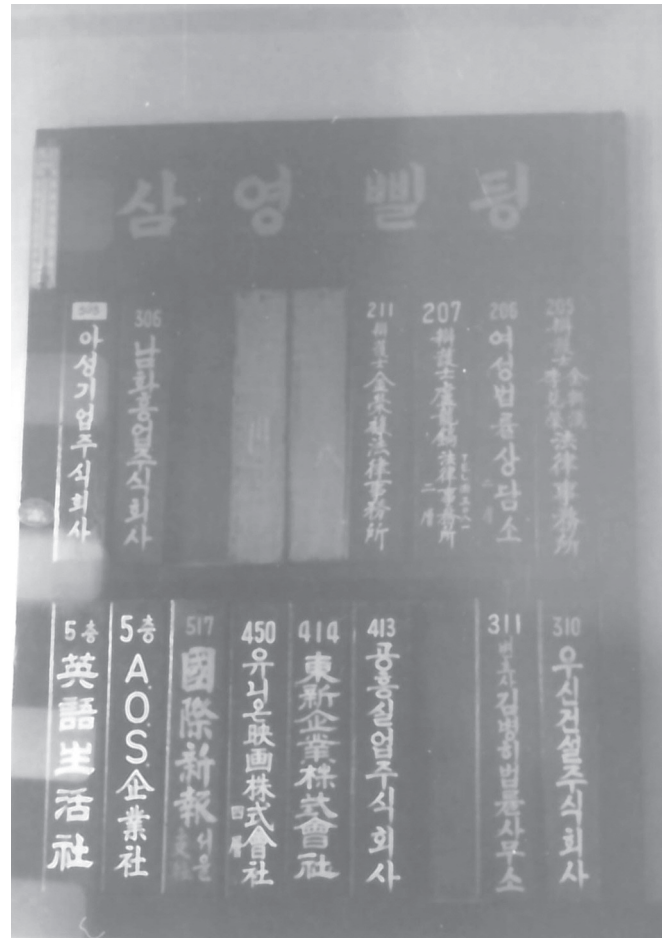
1956년 여성법률상담소 출범 당시 을지로 여충회관에 방

한 칸을 빌려 시작한 상담소는 이후 1960년 4월에는 태평로 삼영빌딩, 1964년 11월에는 서소문 서울가정법원 구내, 1970년 10월에는 퇴계로 간호협회 건물, 1976년 6월에는 여의도 삼영빌딩 등으로 계속 집을 옮겨 다녀야 했다. 문제는 상담소가 이사를 할 때 마다 내담자가 격감한다는 사실이었다. 내담자들이 다시 상담소에 대해 알고 찾아 와서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사 후 최소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 무엇보다 상담소를 필요로 하는 내담자들을 위해 안정적인 터전이 절실했다. 이러한 고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담소가 우리의 집을 가지는 것이었다. 우리의 집을 가지게 된다면 내담자의 편의를 돕는 것은 물론 상담소 사업의 재정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에도 의의가 있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통계 및 심포지엄 등의 원고가 넘쳐 지난 3월호에 이어 연재를 재개한다.



▲ 을지로 여총회관 당시 상담소



▲ 태평로 삼영빌딩의 상담소

었다.

상담소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모습을 띠게 된 것은 1970년 2월 26일의 제8차 정기 이사회에서였다. 당시 서울가정법원 구내에 있던 상담소는 서울가정법원의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또 한 번 집을 꾸려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사회는 우선 상담소 회관을 건립하자는 원칙에 합의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회원 100명을 모집하는 데 착수하기로 결의했다. 백인회원의 모집은 쉽지 않았고 이에 국내 백인회원과 함께 해외 백인회원을 함께 모집하는 방안이 강구되었다. 해외동포에게 동참의 뜻을 구하기 시작한 것은 1973년 12월부터로 이후 1974년 6월까지 미국에서는 워싱턴을 비롯해 20개 지역에, 이어

일본과 캐나다에도 후원회가 결성되었다.

1974년 4월 28일 상담소는 당시 사유지로 불하되고 있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의 866호 (현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 가길 14로 변경)에 회관 건립을 위한 대지 250평을 매입했다. 그 해 10월에 열린 이사회에서는 건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인회원의 입회비 및 건축부담금, 기증회원의 회비 등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했다. 그리고 1975년 3월 30일에는 국내 백인회원 모집이 완료되었고, 이 해 8월 막사아사이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한 이태영 소장은 상금 1만 달러(당시 480만원)를 건축 기금으로 기부했다. 또한 상담소의 활동이 해외에 널리 알려지면서 해외 백인회원 모집 또한 순항



◀ 서소문 서울 가정법원 구내 상담소에서 이태영 소장과 직원들



▶ 퇴계로 간호협회 내 상담소 사무실

하여 1975년 10월 해외 백인회원 모집 또한 완료되면서 11월 말 신축할 회관의 대지를 측량하는 말뚝을 박게 되었다. 여성백인회관의 시작이었다.

여성백인회관의 설계는 연세대학교 지순 교수에게 의뢰했다. 여성의 힘으로 짓는 여성의 집이 여성 건축가의 손을 빌어 시작된 것이다.

당시 여성백인회관 건축기성회 발기총회에서 마련한 규약에 의하면 우선 건축을 위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기로 했다. 일반회원은 1)벽돌 100장 회원 2)벽돌 500장 회원 3) 벽돌 1,000장 회원 4)벽돌 1,500장 회원 5)벽돌 2,500장 회원 6)반 평 건축회원 7)1평 건축회원으로 2천원부터 20만원까지 회비를 내기로 했다. 특별회원은 1)상담실 (부부 혼인 기념실) 건축회원 2)회의실 건축 회원 3)전시실 건축회원 4)도서관 건축회원 5)강당 건축회원 6) 기타 특별 기념실 건축회원으로 100만원에서 1,500만원(강당 건축회

원)까지 회비를 내기로 했다.

건축기성회는 총회 이외에 건축위원회, 실행위원회, 자문위원회를 두었다. 발기총회 이후 건축회원들의 정성어린 모금이 시작되었다. 지상 6층, 지하 1층으로 설계된 회관의 건립비는 약 1억5천만 원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미 모금된 돈이 거의 8천만 원에 달했기 때문에 공사비의 약 절반만 새로 모금하면 되었다.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건축 회원들이 팔을 걷고 나서 서 딸과 며느리 또는 그들의 친구들을 가리지 않고 회원으로 영입하는 열띤 분위기 속에서 모금 전망은 밝아만 보였다.

그러나 이처럼 순조로운 상황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른바 '3.1구국 선언 사건'이 터진 것이었다.

편집부





부부 사이의 폭력 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주

사건번호 2016버2***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8회, 전화상담 3회
피해자(아내) 전화상담 3회
등 총 14회 실시

상담기간

2017. 5. 12. ~ 2017. 11. 11.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녀(3세)가 있다. 행위자는 영업직 회사원이고, 피해자는 호텔 카지노딜러이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성격차이 및 처가문제로 갈등이 있던 터에 2017년 1월 사건당일, 주거지 내에서 가사와 육아 분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나가서 자라며 베개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데 화가 나 피

해자의 뺨 등 얼굴을 수회 때려 6개월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초상담에서 행위자는 폭력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였다. 그러나 상담일정과 관련하여 오후나 야간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고, 종교생활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실시하는 부부캠프에도 참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피해자 역시 3교대로 근무하고 자녀가 어려서 상담에 참여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행위자의 상담을 오전 개별상담을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고, 상담목표는 배우자 존중하기로 설정하였다.

행위자는 부부대화와 관련한 시청각 교육 후 '아내와 함께 보았다면 더 좋았겠다, 앞으로 대화에 더 신경 쓸 것이고, 아내 말을 더 들어주어야겠다' 고 하였으며, 이를 실천하는 노력을 하였다. 또한 행위자는 화를 조절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고, 자신이 상대방에게 지적하거나 요구한다고 하여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신앙에 있어서 피해자와 일치하지 못하는 점을 아쉬워하였지만, 피해자가 직장생활을 하는 한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현재 생활방식대로 지내는 것을 수용하였다. 행위자는 다시는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1** 폭행, 재물손괴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3회,
피해자(아내) 부부집단상담 4회, 라오니캠프 1회,
부부상담 5회, 부부집단상담 4회, 부부캠프 1회,
자녀 미술심리집단상담 8회
등 총 26회 실시

상담기간

2017. 6. 13. ~ 2017. 12. 4.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와 결혼한 지 5년 8개월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5세)이 있다. 피해자는 행위자의 폭력을 두 번 신고하였는데 행위자가 법적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7년 1월 사건 당일 밤, 행위자는 피해자와 아들이 부탁한 크림빵을 사오지 않은 것을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하고, 거실에 있던 빨래건조대를 발로 차고 집 밖으로 나가며 현관문을 발로 차 현관문에 설치된 풍경을 떨어뜨려 손괴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서울가정법원은 행위자를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하는 보호처분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의사소통 방식의 차이, 처가 식구와의 갈등, 자녀 양육가치관의 차이 등을 갈등원인으로, 행위자는 부부 간 성격차이를 갈등원인으로 꼽았다. 피해자는 상담을 통하여 부부간 소통이 잘되고 양가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랐으며, 행위자는 양가 가족과의 관계 개선 이전에 부부 관계 개선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소통을 위한 한 방법으로 타임아웃 기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고,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하도록 도왔다. 부부는 계획대로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상담 종결 시 피해자에 의하면 부부가 상담을 받으면서 크게 다툰 일이 없고 행위자가 전과 달리 폭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행위자가 처가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장차 왕래하겠다는 의사도 밝히는 등 이전에 문제가 15개 정도 있었다면 지금은 5~6개 정도로 줄게 되었다. 부부 모두 상대방의 성격 등 기질적 문제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고 상대방의 need를 이해하게 되었다. 행위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감정을 조절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인 점이 부부관계가 개선되는 전환점이 되었다. 폭력이 재발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행위자 모두 사건발생시 부부관계를 10점 만점에 1점으로, 상담 종결 시의 관계는 8~9점으로 평가하는 등 부부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었다.

사건번호 2017버6**폭행 / 2017버6**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 (남편) 개별상담 2회,
행위자 (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10회, 부부 교육강좌 4회, 부부집단상담 2회
등 총 21회 실시

상담기간

2017. 6. 9. ~ 2017. 12. 8.

상담경과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 되었으며 부부 사이에 1남 1녀(26세, 22세)가 있다. 8년 전 해외 근무 중이던 남편이 외도한

후 부부갈등이 심각하던 터에 2017년 3월 사건 당일 아침,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라고 시비하던 아내가 남편의 안면부를 손톱으로 긁고 목살을 잡는 폭력을 하고, 남편도 아내의 목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력을 하여 부부 모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고 본 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되었다.

초상담시 아내는 이혼 의사는 없다고 하였고, 남편의 외도상대라고 지목하는 여성과 남편 또는 남편 친구들과의 대면을 통하여 남편이 외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달라는 need를 표출하였다. 남편은 과거 해외근무 중 외도 등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였으나 이후 어떠한 이성문제도 없었다고 하였다. 남편도 이혼 의사는 없었지만 아내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불안한 감정을 나타냈다.

아내가 원하는 외도 사실 확인에 대하여는 상담에서 도와줄 것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상담에서는 부부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 또는 좋아져야 할 문제를 다루기로 하였다. 또한 부부는 아들 문제를 다루기를 원하였는데, 부부 모두 아들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들의 문제가 부부 갈등과 양육방식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강점으로 나타났다. 아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양육방식을 코칭하였고, 자녀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상담 종결 시 점검 결과, 부부 상호간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고, 부부관계도 이전에 비하여 좋아졌으며 가족 여행도 다니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는 남은 과제로 남편에 대한 의심 해결과 남편이 자신을 배려하고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외도 문제에 대한 부부의 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아내에게 외도를 규명하기 위한 공격과 부부싸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당부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버7** 특수협박,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지행

행위자(어머니) 개별상담 4회,
부모집단상담 15회 등 총 19회 실시

상담기간

2017. 7. 6. ~ 2017. 12. 19.

삼담경과

행위자는 10여 년 전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피하여 세 딸과 함께 집을 나왔는데 배우자가 행위자의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되었다. 행위자는 아파트의 청소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두 딸은 결혼하고 본 사건 피해자인 막내딸(25세, 대학 재학)만 행위자와 동거하고 있다.

행위자는 2017년 4월 사건당일, 큰 딸의 복사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꾸짖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으로 식탁을 내리치자 화가 나 주방에서 식칼을 꺼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자 행위자의 팔을 붙잡던 중 손톱으로 할퀴어 피가 나자 피해자에게 식탁의자를 집어던져 쇠골뼈 부위를 맞게 하는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으며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담위탁보호처분을 받고 본소에 6개월간 상담위탁 되었다. 행위자와 피해자는 사건 이후 바로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었다.

행위자는 생업 상 오후 4시경 상담참여가 가능하였다. 행위자는 자녀와의 문제를 집중하여 볼 필요가 있었기에 매주 목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한 부모집단 상담을 중심으로 상담계획을 수립하였고 행위자는 성실하게 상담에 참여하였다. 행위자는 집, 직장, 교회 외에 어떤 커뮤니티도 알지 못했는데 부모집단 상담을 통하여 또 다른 커뮤

니티의 경험을 가진 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자신이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하였다는 점, 자녀에게도 인격이 있으므로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 등을 알게 되었다. 폭력에 대하여 확실하게 인식하였고, 향후 절대로 폭력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사건번호 2017바4** 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아버지)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부모집단상담 15회 등 총 22회 실시

상담기간

2017. 6. 28. ~ 2017. 12. 27.

상담경과

행위자는 피해자(딸, 31세, 전문직)의 아버지이다. 행위자는 2017년 2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고 평소 방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물이 담긴 플라스틱 도시락 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는 등 폭행을 하여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상담위탁 보호처분결정을 받고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사건 이후 피해자가 행위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여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화해하였다고 한다.

행위자는 초상담시 국가가 자녀 훈육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니 과연 국가가 가정을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면서 자신의 폭력을 훈육이라고 주장하고 법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였지만, 법은 법이니 따르겠다고 하면서 상담

에 열심히 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행위자는 부모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 자녀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점검하고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점들에 대하여 인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위자는 특수부대원 출신으로 군대방식의 태도가 몸에 배어 피해자의 태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고백하였다. 자신의 생활방식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지만 가족관계에서는 갈등의 여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자기 점검을 하였다. 그리고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컴퓨터, 휴대폰 작업 등을 배우기도 하고 소통도 잘하면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의 정리 습관은 여전히 미흡하지만 자신이 개입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기로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상담기간 중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으며 가정폭력처벌법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다.

박소현 법률구조 2부장



인·터·넷·상·담

Q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여 현재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와 혼인 후 19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문제 등으로 이혼 후 4년 만에 재결합하였지만, 이전과 같은 이유로 부부간 불화가 심해져 재결합 후 4년 만에 다시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두 번째 이혼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인기간이 5년이 되지 않으면 연금 분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재결합하고 4년만 같이 산 전배우자가 분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A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제1항 참조).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한 공무원 배우자의 경우,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으면 공무원연금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참조).

법원은,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 배

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 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전배우자는 4년이 아닌 총 23년의 혼인기간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민선 변호사

밤이 선생이다

황현산 산문집
난다, 2017

종이와 활자에 대한 습관은 여전히 아침마다 현관을 열고 두 개의 조간신문을 집어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실 아침 시간이 여유로운 적은 별로 없어서 신문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은 주말 정도이지만 그래도 오며 가며 신문을 들춰 보다가 '황현산'이라는 이름을 발견하면 그가 쓴 칼럼은 차분하게 읽곤 한다. 아니 했다. 그가 자신의 산문집 『밤이 선생이다』를 펴내면서 쓴 글에서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특별한 무엇을 발견한 적은 없다. 짧은 칼럼들이었기에 깊은 사유의 흔적이나 날카로운 시각의 비평 혹은 재기발랄한 문체에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진정한 어른이 가질 법한 세상에 대한 따뜻한 염려와 정갈한 문장들이 좋았다. 그의 글은 그가 책을 펴내며 쓴 글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말하는 바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 담백하고 정직한 글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내가 품고 있던 때로는 막연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생각들을 더듬어내어, 합당한 언어와 정직한 수사법으로 그것을 가능하다면 아름답게 표현하고 싶었다. ... 사람들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리워하였다. 이 그리움 속에서 나는 나를 길러준 이 강산을 사랑하였다. 도시와 마을을 사랑하였고 밤하늘과 골목길을 사랑하였으며, 모든 생명이 어우러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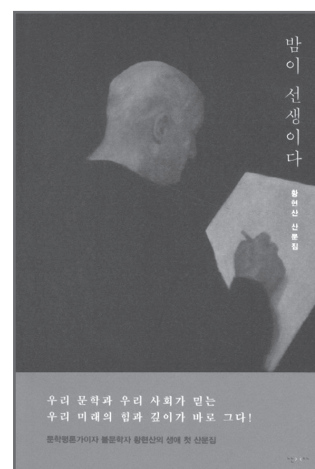
휴가를 앞둔 8월 초 신문에서 그의 부음을 보았다. 그가 번역한 '어린 왕자'를 가지고 있지만 휴가 때 읽으려고 이 책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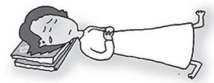
이 산문집은 문학에 관한 논문이나 문학 비평이 아닌 글로는 처음 엮여진 그의 첫 산문집이다. 1980년대부터 2013년까지 삼십여 년의 세월 속에 발표했던 여러 매체 속 글 가운데에서 추려 이를 1부와 3부에 담았고, 2부에는 구본창, 강운구의 사진과 그 사진에서 연상되는 사유를 풀어낸 글을 사진과 함께 싣고 있다. 2부에 '겨울의 개'라는 글이 좋았다. 1973년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면 수분리의 한 풍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에서 풀어낸 그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갔던 주막의 기억도 안타까우면서 좋았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머리에 짐은 인 아낙과 어린 소년 그리고 그들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개 한 마리의 풍경에서 “이 겨울의 개는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신이다.”라고 도달하고 있는 결론도 정말 좋았다. - 사족처럼 붙인다면 본문에는 강운구의 사진이라 나와 있는데 사진 아래에는 구본창이라 되어 있어 궁금했다.

이제 고인이 된 저자 황현산은 1982년과 2015년 2차례나 '어린왕자'를 번역할 정도로 한국 불문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고 보들레르의 '파리의 우울' '악의 꽃' 번역자로도 유명하다. 불문학자로서의 업적 뿐 아니라 비평과 산문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올해 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한 장씩 들춰 보았던 '파리의 우울'도 그의 번역이었다. 그가 남긴 다른 산문집 『사소한 부탁』도 읽어 보려 한다.

선생이 세상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하시길 빈다.

이 숙 현 편집부장





한 때



임상실습 소감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실습을 마치고

상담소는 법교육의 일환으로 법학과, 사회복지학과, 법학전문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등에게 다양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본 상담소에서 2주간 임상실습을 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소감을 실는다.

박 성 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주간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내주신 소장 과제와 법무관님들이 내주신 사이버 상담 과제는 그동안 배웠던 법률지식을 복습하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뿐만 아니라, 추상적으로 익혀왔던 법률지식들이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소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법무관님들의 실무적합적인 가르침을 통해 예비법률가로서의 소양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 2주간 보고 듣고 경험해본 것을 바탕으로 실력 있는 법률가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법학실력의 제고도 2주간의 실무수습기간 동안 중점을 둔 부분이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주안점을 둔 점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늘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야간 상담과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 법원 상담 등을 참관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더 다양한 고민, 슬픔, 어려움을 공감하고, 조금이나마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법이 해결할 수 없는 상처들을 보며 답답함을 느끼는 동시에, 법률가 이전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담 전화를 받으며 한 분 한 분의 사연이 참 무겁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전화 한 통 한 통이 무섭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분들에게 정확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망설이며 전화를 받고는 했습니다. 상담을 참관하며, 사연은 안타깝지만 법률적으로는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사안의 해결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증거 부족 등으로 실무상으로는 어쩔 수 없음을 알려드려야 할 때 마음이 무거웠지만, 정확한 상담이 그 상황에서의 최선이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2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제도의 보완과 훌륭한 법률가의 탁월한 법리 적용 및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실무수습 일정을 소화하며 추상적으로만 생각되던 인권이나 공익, 그리고 이를 실천하는 법조인의 덕목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마음을 안고, 지금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동 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길을 가다 돈을 줌의 것처럼 우연히 좋은 것이 저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수강신청에 실패하여 수강하게 된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강좌, 수업 중 꾸벅꾸벅 졸음에 지쳐 일어날 때 귀에 들리던 이태영 박사의 일대기, 그리고 그의 열정과 헌신이 담긴 이 곳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대한 소개가 그러했습니다. 그즈음, 이곳에서 실무수습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던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법률구조기관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2주의 실무수습 기간 동안 위의 것들을 흠뻑 느낄 수 있었고 좋았던 기억으로 이 후기를 작성합니다.

첫 출근 뒤 곧바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어 당황스러웠습니다. 가족법에 ‘ㄱ’도 모르는 저이기에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혹시나 해석 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물어올 때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담소 위치를 안내하는데 급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당황’ 대신 ‘울컥’ 하는 감정이 들었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도와드려야겠다는 일념 하에 절박하게 이리저리 책을 뒤적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족법적 지식을 배울 수 있었음은 물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법조인의 자세 역시 의뢰인과 마찬가지로 ‘절박’ 해야 하는 것이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한 서류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전화상담의 위험성을 항상 주의해야 한다는 점 역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상담소의 많은 선생님들로부터 지금 내가 전달하는 ‘조언’ 하나가 누군가의 법적 권리에 직결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상담 이외에도 실무수습 프로그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업무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 상담, 상담위원의 전문적인 상담을 직접 옆에서 볼 수 있는 상담참관, 실제 법률구조를 위한 서류검토, 의견서 및 법률문서 작성 등 학교수업과 교과서 바깥에서 일어나는 법률구조의 매커니즘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주로 다루는 가사사건은 개인에게 있어서는 심리적 지지대이자 기반이 되는 ‘가정’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실무수습 기간 동안 그러한 지지대이자 기반이 훼손되고, 비탄과 울음으로 범벅된 이들의 사연을 접해야 했습니다. 가사 사건을 위한 법전의 조문은 단지 몇 줄에 불과하고, 교과서는 한 권으로 족하지만 사람들이 들고 오는 사연의 무게는 태산같이 무겁고, 하늘을 뒤덮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그런 사연에 공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 제가 생각하는 공익과 인권의 구체화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충실히 보여주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감사함을 느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를 위한 법적 구조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말로 후기를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 립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2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가사소송 전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기관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2주간 했던 활동을 다음과 같이 하나씩 떠올려보며 소감을 적으려고 합니다.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방문 상담 및 서울가정법원 출장 상담 참관

2주간 방문 상담과 출장 상담 등을 포함하여 6건 정도의 상담을 참관하였습니다. 상담 참관을 하면서 이혼 소송 절차 등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배울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내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법적 쟁점을 이끌어내어 차분하게 내담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을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공감이나 무미건조한 법률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적절한 대화와 단호한 전달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실무를 많이 접할 수 있어서 무척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2. 법률구조 의뢰서/소장 과제/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 작성

다양한 법률 문서를 작성해보면서 실무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사실관계들이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어떠한 문장으로 전달하여야 법적 쟁점을 깔끔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보면서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접하던 법률 지식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3. 인터넷상담 과제 작성

첫 실무수습인데다, 1학년 1학기만 수강한 채 실무수습에 참여하게 되어 완벽하게 상담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몹시 어려웠지만,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론과 실무가 다른 점도 체험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법무관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률 정보를 인터넷이나 종이 자료를 통하여 검색하는 요령도 생겨서 매우 보람찼던 과제였습니다.

4. 가정폭력 행위자 집단상담 참관

가정폭력 행위자를 이전까지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막연하게 상상만 했었는데, 실제로 그들을 보니 모두 정말 평범한 가장처럼 생긴 사람들이라서 몹시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였던 아내에 대해서 오히려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의 폭력을 고소한 아내에 대하여 억울한 심정을 느끼고 있는 점에 많이 실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행위자 집단상담을 진행하시는 선생님, 그리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위원님의 설명을 듣고 행위자 집단상담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소에 와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었지만, 그만큼 상담소가 하는 일에 대하여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5. 변호사님, 상담위원님과 대화

과제와 상담 참관이라는 공식적인 실무수습 일정 이외에, 식사 등을 함께하면서 변호사님, 상담위원님과 나누는 대화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무수습생들을 위해서

법무관님들이 로스쿨 전반, 그리고 가사소송 전반에 대하여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위원님들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역할에 대하여 친절하고 세세하게 설명해주셔서, 비록 2주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기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변호사로서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의 2주간 실무수습은 다시 없을 값진 경험으로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강 화 영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화상담, 상담참관, 가정법원 출장상담참관, 이혼 전 상담 프로그램, 가정폭력행위자 집단상담 등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고 그 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도와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 법무관님, 상담위원님들께서 상담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작은 도움의 손길일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반면, 아무래도 무료 상담을 하다 보니, 기관의 취지와 맞지 않음에도 받아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인권기관에는 정말 도움이 절실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분들만 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많이 오시기도 했고, 또한 가정법률상담소이다 보니 가정폭력가해자 분들도 많이 찾아오셨습니다.

특히 보호처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진행할 때 참관을 종종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그 거부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을 상담과 교육을 통해 다시 그러지 않게끔 만드는 것 또한 이 기관의 일임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것도 우리가 피해자, 사회 혹은 억울한

가해자의 인권을 위해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일 수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지원을 하며 지원동기에 저는 이렇게 썼었습니다. ‘이번 실무수습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직접적인 경험을 쌓아서 평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정의관과 가치관이 직업이 되었을 때,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의문을 해소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배워서 구체적인 미래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2주간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지만, 인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또한 생각보다 섬세하고 다듬어 나가야 할 부분이 많은 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조인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한 많은 것을 고민하고 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조 윤 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소장 과제를 하면서, 법률 서식을 처음으로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제가 배운, 그리고 앞으로 배울 법학 지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미리 체험할 수 있었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지 동기부여와 방향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서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로스쿨 졸업까지 제가 이런 서면을 직접 써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관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서 큰 어려움 없이 마칠 수 있었고, 이후 소장 과제를 작성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적인 한계로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가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간 상담을 참관하면서, 야간 상담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주간 방문 상담에 큰 어려움을 겪는데, 야간 상담의 존재 자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수습을 하는 인턴의 입장에서 야간에 남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님들의 공익활동을 참관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이나 법문서 작성 등의 과목을 듣지 않고 실습에 임했는데, 제 자신에게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요 업무를 실습해 볼 수 있었고, 보람찬 기간이었습니다. 실무수습을 나오기 전,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었지만, 많은 분들이 배려해주신 덕분에 실무수습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행위자 집단상담은 현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

법률상담

가사, 민사, 형사, 파산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접, 서신 및 전화·지상·순회·인터넷·출장·다문화 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등 다양한 상담창구가 개설되어 있다. 직장인을 위한 야간상담도 매주 월요일마다 있다.

화해조정과 소장작성

분쟁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방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화해조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서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간단한 소송 관련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준다.

소송구조

상담결과 소송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상담소에서는 무료 소송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무료소송구조는 상담소 소속 변호사와 공익법무관 그리고 자원봉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백인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가정폭력피해여성,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들을 대상으로 가사소송 전반은 물론 필요한 경우 민사, 형사 사건까지 포괄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

다문화가정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외국변호사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영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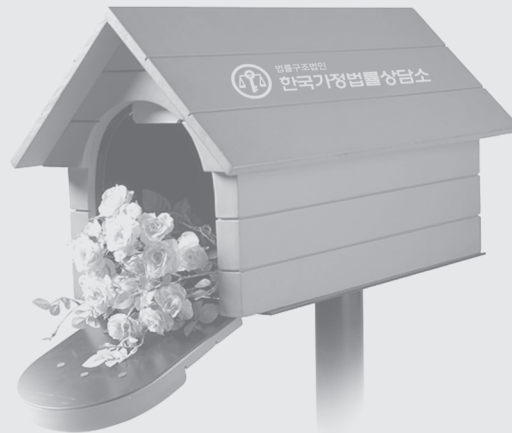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신청 무료 지원

개인신용불량자들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등의 법적절차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 출장상담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에서 무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소·소·식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겸 직원 재교육

지난 8월 27일 본소 8층 강의실에서 상담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 재교육을 겸한 가족법 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다. 이날 회의 및 교육은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상용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 대표 변호사),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가사/상속센터장),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소혜 교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 본소 가족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용 교수의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현소혜 교수의 '자녀의 성과 본 관련 조문 개정안 제언' 배인구 변호사의 '민사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발표가 있었으며, 발표 후에는 주제와 관련하여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 개강

8월 28일 본소 광배희 소장이 담당하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기 개설과목 「리걸클리닉Ⅱ」의 개강 수업이 본소에서 진행되었다. 본 교과목은 법률구조법인인 본 소에서의 법률상담 참관을 통하여 실제 법률가가 만나는 상담사례 중 빈도가 가장 높은 가정법률분야 뿐만 아니라 민사 및 파산 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체험하며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재를 이해함으로써 전문법조인의 자질을 고양하고 리걸 마인드를 함양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은 강의, 법률상담 참관(본소 및 서울가정법원 종합민원실내 본소 상담실), 상담 사례 발표와 토론 및 강평 등으로 계획되었고, 광배희 소장과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의 팀티칭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수업에서 광배희 소장은 본소 소개 및 법률구조의 이론과 실제(1)를 주제로 강의하였고,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이 상담참관 및 실습 오리엔테이션을 하였다. 본 교과목은 16주로 계획되어 있으며 12월 11일 종강한다. (관련사진 2면)

출장 법교육 및 본소 실습 활발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동국대 현장실습 연수 (7/30-8/24)

강수지, 김진태, 유승민, 이지민, 최지은

●이대 현장실습 연수 (7/2-8/31)

최수연

출장법교육

8.28. 영등포 보현의 집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법교육
- 전규선 · 권지연 상담위원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박소현, 정다혜,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황현정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8월 25일 조은경 상담위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징수부 이재근 차장 및 오지현과장 등과 함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및 연계와 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 홍보 등에 관해 논의했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8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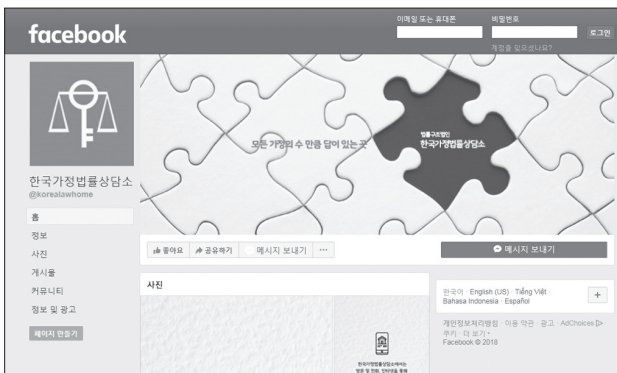
각배회 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 참석 등

각배회 소장은 8월 28일 본소에서 열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Ⅱ」 개강을 맞아 첫 강의를 했다. 25일에는 이화여대 법학과 동창회 주최로 열린 노정희 동문 대법관 취임 축하 모임에 참석했으며, 31일에는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세상과 소통하는 상담소의 SNS

<https://www.facebook.com/korealawhome>



현대 사회의 새로운 소통창구로 등장하여 여론과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시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가정문제라는 내용의 특성상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온 상담소는 이와

<https://www.twitter.com/LegalAidCenter>



더불어 새로운 세대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본격적인 SNS 활동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가정문제 및 기타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에서 상담소의 존재와 활동을 알리는데 적극 나설 예정이다.

● ● ● 고맙습니다

2018년 8월 자원봉사자

• 전화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인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님

• 주간상담을 해 주신

강종협, 김태주, 문동주, 박수열, 박은정, 신수경,
안서연, 이해민, 이효재, 전현정 변호사 님

• 야간상담을 해 주신

김소이, 김연두, 김윤미, 김재희, 김진아, 이승주,
황미옥 변호사 님

•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상담을 해 주신

사대진, 임채룡 변호사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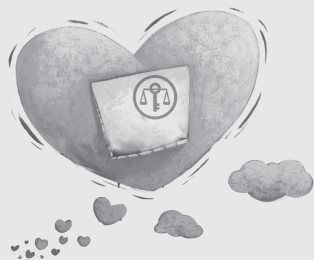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예찬, 김중근, 남서연, 박소연, 배소희, 손지희,
이민주, 최희원, 함솔희, 홍현정, 김도영, 김유진,
김준성, 채서현, 최유정, 허호재 님

후 원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한수자 · 최윤환,
최정난 님



회원이 되시려면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농 협 317-0003-1418-11 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780-5688 총무부

지·부·소·식

강릉지부

8월 3일~4일 '2018 강릉문화재체험프로그램' 중 가정
법률상담을 실시하였다. 21일 평창군 가평초등학교 전교생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였다. 27일 강원도공무원
대상으로 양성평등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구리 · 남양주지부

8월 7일, 14일, 21일,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가사조
정, 형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이정숙, 장경아, 김효경, 황은
하, 정이수, 여지은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군산지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가사조정을 2회, 부모양육안내
교육을 2회 실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조
정을 2회 실시하였다.

대구지부

대구가정법원 이혼관련 출장상담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
며 상담 40건, 가사조정 6회를 실시하였다. 이혼 전 · 후 가
족관계회복사업으로 개별상담(125명, 157건), 가족상담 2
회, 부모교육 4회를 실시하였다. 김진원, 정건진, 김주현,
정홍옥, 도낙희, 전종필, 김영심, 박경로 변호사가 법률상
담봉사를 하였다.

성남지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협력사업으로 성남지원 협의이혼의무상담을 4회, 이혼부부의 미성년자녀양육안내를 성남지원 6회, 광주시법원 2회 실시하였다. 장수혁, 임재훈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송도지부

8월 9일 가정폭력예방 및 생활법률 캠페인을 인천터미널에서 실시하였다. 17일 인천시 옥련1동주민센터와 업무협약식을 실시하였다.

수원지부

8월 6일 수원지방법원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28일 수원지방법검찰청 국민소통옴부즈만에 참석하였다. 허정택, 김정혜, 김소이, 최지희, 정원진, 이운선, 강은혜, 한승일, 김춘희, 김진영, 서정식, 박진우, 김현명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순천지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가사조정을 2회, 가사상담을 5회 실시하였다. 8월 7일, 14일, 21일, 28일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주지부

전주지방법원 협의이혼 상담을 3회, 가사조정을 2회 실시하였다. 8월 7일, 21일 LH 전주주거복지 통합지원센터에서 가정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홍보를 실시하였다. 정아람, 진희원, 곽효영, 문승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나영주, 최대일 변호사가 소송구조봉사를 하였다.

중구지부

8월 22일 청구역에서 가정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김창건, 박은정, 이동건, 홍지혜, 임유정, 황은하, 박수열, 심미숙, 이수희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진주지부

양임석, 장진호, 류기정, 정동윤 변호사가 소송구조 및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창원·마산지부

8월 20일 창원지방법원 가사조정 사례연구회의에 참석하였고, 21일 가사조정을 실시하였다. 오유경, 고정향, 강재현 변호사가 법률상담봉사를 하였다.

청주지부

7월 27일 이사회를, 31일 2분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018년 7월 전국 상담통계

상담소 본부 및 전국 지부에서 2018년 7월 한 달 간 접수·처리한 총 상담건수는 14,376건으로 본부가 7,579건, 지부가 6,797건이었다. 본부는 6,867건의 법률상담 외에 화해조정 544건·소장 등 서류작성 107건·소송구조 6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부는 법률상담 5,560건·화해조정 1,138건·소장 등 서류작성 41건·소송구조 58건을 처리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867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18년 6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이혼(17.2%→21.2%), 친권·양육권(5.4%→6.0%), 유언·상속(7.4%→7.5%), 개명(0.9%→1.1%), 성변경(1.1%→1.2%)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파산(4.0%→4.4%),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간통(0.0%→0.1%)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본부의 법률상담 6,867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1,213건(17.7%), 전화상담 5,473건(79.7%), 통신 및 인터넷상담 180건(2.6%), 지상상담 1건(0.0%)이었다.

2018년 8월 본부 상담 통계

총상담 7,138		
법률상담 (6,660)		
면접	전화	통신
1,212	5,186	262
화해조정	소장 등서류작성	소송구조
332	84	62

* 2018/8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80,752건

지 부	총상담	법률상담					합계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면접	전화	통신	서신	기타				
서울(본부)	7,579	1,213	5,473	180		자상 1	6,867	544	107	61
강릉 (033) 652-9555	140	98	33				131	6	1	2
구리·남양주 (031) 551-9976	305	41	73				114	189		2
군산 (063) 442-1560	138	54	43				97	39		2
대구 (053) 745-4501	811	425	90	5		출장 166	686	117		8
대전 (042) 520-5258	255	42	203				245		10	
동해 (033) 535-0188	120	33	85				118			2
목포 (061) 273-2514	155		155				155			
부산 (052) 667-2314	479	73	216	2			291	187		1
성남 (031) 707-6661	375	190	91	1		출장 24	306	64	5	
송도 (032) 834-1369	340	67	81	5	1		154	163	10	13
수원 (031) 243-4600	458	169	105			출장 90	364	92		2
순천 (061) 753-9910	218	78	137				215	2		1
안동 (054) 856-4200	160	22	93			출장 2	117	43		
울산 (052) 246-9568	127	57	55				112	11	2	2
익산 (063) 851-5113	233	51	181				232			1
인천 (032) 865-1120	302	82	132				214	78	3	7
천주 (063) 244-2930	219	105	93	12	7		217			2
청음 (063) 535-3705	179	77	102				179			
체천 (043) 644-5690	108	39	66				105			3
충구 (02) 2238-6554	342	252	89				341			1
진주 (055) 746-7975	165	39	85				124	33		8
창원마산 (055) 261-0280	296	155	104	1			260	34	1	1
청주 (043) 257-0088	364	248	57				305	54	5	
춘천 (033) 257-4688	95	43	12	1		출장 39	95			
태백 (033) 554-4004	157	26	28			출장 103	157			
평택안성 (031) 611-4251	199	60	87			출장 24	171	24	4	
포항 (054) 283-7555	57	4	51				55	2		
지부총상담	6,797	2,530	2,547	27	8	출장 448 서신 8	5,560	1,138	41	58
총 상담	14,376	3,743	8,020	207	8	출장 448 서신 8 지상 1	12,427	1,682	148	119

** 2018/7 인터넷을 통한 법률정보제공(본부) 65,463건

백인변호사단 소 · 송 · 구 · 조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자녀를 유기한 친부의 친권을 일부 상실시키고
외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231

담당 : 정일순 변호사

사건명 :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여, 74세)은 사건본인들의 외조모이고, 상대방(남, 53세)은 사건본인들의 부이다. 사건본인들의 모는 2004년 사건본인2를 임신 중이던 2007년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사건본인2의 출산을 위해 항암치료를 거부하다 2010년 사망하였다.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의 모가 사망하기 전까지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이에 사건본인들의 친모가 투병하기 시작한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1년에 한 차례 정도 사건본인들과 왕래를 하였을 뿐이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많았다. 상대방은 파산신청을 하는 등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태이다. 청구인은 10년 이상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사건본인들도 청구인을 유일한 보호자로 생각하며 따르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어 여권을 만들거나 핸드폰을 개통할 때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들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청주지방법원 2018.5.31.)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처분·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의무 내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소송행위(이를 위한 변호사선임행위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2018. 7. 31.까지 사건본인의 재산목록[기준일: 2018. 5. 31.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 서비스 조회 또는 상속인(후견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 결과를 첨부할 것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은 2019. 7. 31.을 시작으로 매년 7. 31. 후견사무보고서(기준일: 매년 5. 31.)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전 남편을 상대로 이행명령 신청**

법률구조 2017-347

담당 : 주소희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6세)과 피신청인(남, 29세)은 1997년 4월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19세, 16세)을 두었으나, 피신청인이 2억 상당의 빚을 지고 가출하여, 2007년 10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후 신청인은 보증금 200만 원의 방 한 칸에서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며 피신청인이 남긴 빚을 갚기 위해, 전단지 붙이기, 만

두공장, 자동차세차 등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하였다. 그럼에도 신청인은 월 70~80만 원의 소득밖에 얻을 수가 없어, 피신청인에게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신청인이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게 되면서, 사건본인들이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미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 (서울가정법원 2018.5.11)

피신청인은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단**** 양육비 청구 사건의 2016.8.18.자 심판에 기한 양육비 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신청인에게 2017.9.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3,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8.6.부터 2018.11.까지 6회에 걸쳐 월 5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라.

가정생활에는 무관심 한 채 폭언과 폭력을 일삼는 남편에 대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56

담당 : 문석빈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와 피고는 많은 나이차이(13살 차이)에도 혼인을 하였고, 슬하에 3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별다른 직장도 없이 집에서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한다면서 집에만 있었고, 원고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10년 이상 동안 계속되다 보니 원, 피고 사이에 감정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불신만 가득하여 가정불화가 생겼고, 결국 별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별거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은 피고가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대로 원고를 상대로 사전처분으로 과거양육비 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관할법원인 인천가정법원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하여

재판기일 이전에 전화면담을 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기일에 원만히 조정이 성립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위촉받아 이 사건의 원고를 도와 소를 제기하고 조정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두 사람이 모두 이혼은 어쩔 수 없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을 고려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어서 흐뭇하였습니다.

조정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받을 장래 양육비를 피고가 원하는 금액대로 감액하는 상당한 양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별거 기간 동안 자신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을 남성 혼자서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원고에게 양보하였고, 원고가 많은 양보를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자녀들의 보금자리가 마련되면 자신이 자비로 냉장고와 세탁기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자녀들의 학교통학을 위해 사용하던 차량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 자신의 경제적 이득만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지만, 위와 같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록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앞으로 두 사람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초 면담과정에서 원고는 ‘이혼하고 한부모 가정으로 정부의 보조를 받아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원고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결과 : 조정 (인천가정법원 2018.5.11.)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2019.2.28.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일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10만원씩 매월말일 지급한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거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한다.

4. 피고는 2018.6부터 사건본인들을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후 7시까지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5. 가. 원고는 2018.5.23.까지 현재의 주소지에서 다른 주소지로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하기로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5.23.까지

- (1)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 (2) 원고명의의 차량을 인도하며,
- (3) 냉장고와 세탁기를 마련해주기로 한다.

6.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7.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호간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8. 피고는 2018즈기*** 사전처분 신청을 취하한다.

9.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문석빈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내용입니다.

혼인 초부터 폭언과 폭력을 일삼고 가족에게 흥기까지 휘두르는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05

담당 : 권영심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3세)와 피고(남, 53세)는 1995년 3월 혼인 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는 결혼 초기부터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원고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후에는 원고에게 성적인 학대행위도 일삼았다. 경제적인 부분도 무책임 하여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그만두기 일쑤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전세보증금을 빼서 당구장을 하겠다면서, 전세보증금에 대출금까지 얻어 결국 당구장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1년도 안되어 당구장을 처분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다. 그 뒤로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의 기분에 따라 원고와 자녀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는 늑골골절 등으로 수차례 치료 받

아야 했고 이제는 칼과 같은 흥기로 찢어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원고 뿐 아니라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더 이상은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어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 (대전가정법원 2018.4.24.)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위 이혼을 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향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위자료, 재산분할 포함)을 포기한다.
3. 원고와 피고는 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4.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아내와 처가식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과의 이혼 조정

법률구조 2018-107호

담당 : 문대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33세)와 피고(남, 33세)는 2012년 12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사건본인(남, 5세)을 둔 법률상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당시부터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채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신혼집도 원고가 대출을 받아 어렵게 마련한 것이었다. 하지만 임신 중에도 열심히 일하는 원고와 달리 피고는 직장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였고 특하면 직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으로 사고를 치고 돈을 물어주어야 했다. 어느 날은 대형트럭을 구입해 일을 하겠다며 원고에게 보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여, 하는 수 없이 동의하였는데 알고 보니 원고 명의로 거액을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평소 피고는 폭력적인 성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는데 90kg가 넘는 거구의 피고는 원고나 원고의 식구들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을 행사하였고, 술에 취해 백일이 갓 지난 사건본인을 안고 계단을 구르며 자해를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별거에 이르렀으나 별거

후에도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이 잦았으며 지금 피고는 강도치상으로 복역 중인 상황이다. 이에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도 관계를 정리할 필요를 느껴 이혼을 결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배제를 요하는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6.7.)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지 않는다.
4.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5.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재산이 없다고 주장한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8-160

담당 : 백신옥 변호사

사건명 : 부동산 가압류

내용 : 채권자(여, 46세)와 채무자(남, 48세)는 1999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18세), 사건본인2(남, 15세)를 두었으나,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해 2006년 2월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이혼 당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해 특별히 협의한 바 없으며, 상대방은 이혼 후 단 한 번도 사건본인들을 찾아오거나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다. 채권자는 건강이 좋지 않아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해당 소득으로는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본소에 양육비 청구를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한 바 있다. 위 소송에서 채무자는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소유재산을 조회한바, OO시 ◇◇면 000번지와 000번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세확인결과 위 토지들의 시세는 각각 약 3억 1,600만원, 1억 2,600만원으로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양육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을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가압류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제주지방법원 2018. 5. 29.)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보증 및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7-345

담당 : 이수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5세)은 1997년경까지 여러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법 많은 재산을 모았다. 하지만 1999년경 지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 신청인은 이에 대한 소송에 매달리느라 사업에 신경을 쓰지 못했고, 결국 지속된 적자로 폐업에 이르렀다. 한편 신청인은 친동생의 사업 확장 과정에서 친동생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게 되었는데,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친동생은 끝내 자살을 하였고 신청인은 고스란히 보증 채무를 떠안았다. 이후 재기를 꿈꾼 신청인은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중국에 골프 관련 대학교 설립을 준비하며 남은 재산과 함께 대출금을 모두 쏟아 부었다. 하지만 대학교 설립은 무산되었고, 빚더미에 앉은 신청인은 2010년경 경제 갈등으로 잦은 가정불화를 빚은 배우자와도 협의이혼을 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친척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며 택시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최근에는 백내장 등 건강상 문제가 생겨 지속적

으로 근로를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6.22.)
채무자를 면책한다.

사실혼 해소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한 어머니로 친권자 지정 조정 및 양육비 결정



법률구조 2017-382

담당 : 류은아 변호사

사건명 :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내용 : 청구인(여, 54세)과 상대방(남, 52세)은 1999년 11월경 결혼식은 올렸으나, 혼인신고는 하지 못한 채 2000년 10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2년 10월경 헤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게 되었다.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는 지정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방학 때 만이라도 사건본인을 만나달라고 상대방에게 부탁하였지만,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단 한 번도 만나러 오지 않았다. 또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양육하기 위해 판매직에 종사하여 소득활동을 하였으나 극심한 섬유근육통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80만원의 수급비로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나 이마저도 상대방의 수입으로 인해 사건본인에 대한 급여가 제외되어 월 55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상대방은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약 2년간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이체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안정적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친권자 및 양육자 조정 (대구가정법원 2018. 6. 7.)

1.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위 조정된 사항에 관한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양육비 강제조정 (대구가정법원 2018. 6. 7.)

1. 상대방은 2018. 6. 30.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그 밖에 무소득증빙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청구인이 종전과 같은 월 80만 원 가량의 기초수급비를 받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로 2020. 1.경부터 2024. 12. 31.까지 월 100만 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한다(총 합계 6,000만 원을 60개월로 분할 지급하는 것임).

3. 청구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사업 실패와 부족한 생활비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4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55세)은 화장품을 판매하는 노점을 운영하며, 인쇄소를 운영하는 배우자와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 하지만 1995년경 배우자가 운영하는 인쇄소가 경제난으로 폐업하고,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신청인은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노점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나 물품재료비 등 사업자금이 항상 부족하였고, 뿐만 아니라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야 했으므로 생활비 또한 부족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용카드 및 대출 등을 통해 이를 충당하였는데, 자금난이 좀처럼 해결되지 않아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2003년경 더 이상 노점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장사를 그만두고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까스로 생계유지를 하였는데, 2010년경 외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현재 신청인은 건강 상 문제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경비원으로 일하며 벌어들이는 월 평균 소득 1,300,000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처럼 정신질환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7.19.)

가출하여 10년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한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7-397

담당 : 김지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9세)와 피고(여, 54세)는 2005년 9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중국국적인 피고는 혼인신고 5개월 뒤 한국에 입국하여 원고의 고향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혼인생활 약 3개월 후 피고가 가출하여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그 후 원고는 고향을 떠나 인천에서 머물며 일을 하였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재기하려고 애쓰던 중 폐결핵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에 이름뿐인 법률혼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4.19.)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양육비 지급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에 대해 양육비 이행명령

법률구조 2018-62

담당 : 임소진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48세)과 피신청인(남, 57세)은 1993년 만남을 시작하여 슬하에 사건본인1(여, 22세)과 사건본인2(남, 17세)를 두었으나, 피신청인의 잦은 음주와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헤어졌다. 신청인은 그 후 10년이 넘게 사건

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다, 2017년 피신청인에게 인지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다. 그리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2의 장래양육비로 월 30만 원을 지급키로 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판결 이후에 신청인에게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기에 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신청인과는 달리, 피신청인은 체육 교습소를 운영하며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사건본인2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인 월 30만원의 양육비지급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기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6.15.)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서울가정법원 2017드단**** 인지 등 사건의 2017.9.18.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의 일부인 250만 원을 2018.7.부터 2018.11.까지 매월 말일에 50만 원씩 5회로 분할하여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친권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 대한 친권자 변경신청 조정



법률구조 2018-88

담당 : 박성민 변호사

사건명 : 친권자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5세)과 상대방(남, 55세)은 2008년 10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남, 9세)을 두었으나, 2012년 5월 조정으로 이혼하였다. 당시 중국국적인 청구인이 아직 한국생활에 서툰 부분이 많고 상대방이 친권을 주장하여 상대방을 단독친권자로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혼 후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에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사건본인도 활발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였다. 하지만 사

건본인의 친권자가 상대방으로 지정되어 있는 까닭에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돌보는데 필요한 전학, 이사, 여권발급 등의 일에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했고 그때마다 상대방은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며 비협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사건본인과 청구인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에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로서 사건본인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의정부지방법원 2018.5.16.)

1. 가. 상대방은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관련 협조요청(동의서 제출, 서명 등)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최대한 협조한다.

나. 상대방은 향후 청구인에 대하여 욕설, 비방 등을 내용으로 한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 등을 보내지 아니한다.

2. 상대방이 제1항의 의무를 1회라도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하기로 한다.

3.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0년 전 홀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연락 두절된 남편에 대해 이혼판결

법률구조 2018-138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5세)와 피고(남, 63세)는 1979년 7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일하던 미용실을 정리하고 자녀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이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 1984년경 피고 혼자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원고는 약 600만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다. 원고는 어린 자녀를 돌보고 빚을 갚느라 건강마저 잃었으나, 피고는 1985년 시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한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또한 자녀들이 성장하는 내내 어떠한 경제적인 지원도 없었으며, 연락 가능한 수단도 남기지 않

았다. 2014년경 피고와 갑작스레 연락이 되어 차남의 결혼식에는 참석하였으나, 그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되었다. 2017년경 원고는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장려대상 제외 통보를 받았다. 이에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해보고 피고가 제주도에서 외국인 여성과 약 10개월 동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찾아갔으나, 피고가 미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6.1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미지급된 과거양육비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예금채권 가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8-184

담당 : 김현익 변호사

사건명 : 채권가압류

내용 : 채권자(여, 47세)와 채무자(남, 49세)는 1997년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남, 20세)을 두었으나 채무자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불륜으로 2005년 협의이혼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구두약속 하였다. 그러나 채무자는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해오지 않았고, 채권자가 식당일로 얻는 월 70만 원의 소득으로 월세 50만 원을 부담하며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채권자는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사건본인을 최선을 다하여 양육하였지만, 해가 갈수록 필요한 양육비는 늘어만 갔다. 월 20만 원의 가용소득으로는 사건본인의 수업에 필요한 문제집 하나 사줄 수가 없어, 대출을 받으면서 사건본인을 양육하여야 했다. 그러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고 월세를 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다행히 사건본인은 올 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입학하였다. 채권자는 이제라도 미지급 받은 양육

비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아 사건본인의 학비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소에 구조를 요청하여, 과거양육비 3700만 원의 지급을 채무자에게 청구한 상태이다. 그러나 채무자는 과거양육비를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과거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채권자는, 일부금액을 가압류하여 집행을 보전하고자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대구가정법원 2018.6.15.)

1.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들은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양육비청구채권

청구금액 금 3,000,000원

**자녀를 유기한 친모의 친권을 상실시키고
위탁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

법률구조 2017-318

담당 : 김민욱 변호사

사건명 : 친권상실 및 미성년후견인선임

내용 : 청구인 겸 사건본인(여, 4세)은 상대방(여, 41세)의 친딸이다.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서○○는 2년 전 사건본인의 양육을 위탁받은 위탁모로 현재까지 배우자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상대방은 미혼모로, 2015년 1월경 사건본인을 모텔에 유기하여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 사건본인은 생후 8개월부터 위탁부모에게 위탁 양육되었고, 위탁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있다. 현재 사건본인과 위탁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친밀하게 잘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사건본인의 위탁모는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어 사건본인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에 위탁

모는 사건본인을 향후 보다 안정적으로 양육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의정부지방법원 2018.7.5.)

1.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2.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서○○를 선임한다.
3.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2월 이내에 사건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미성년후견인은 이 심판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기준일: 매년 이 심판 확정일과 같은 월, 일)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미성년후견인이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사건본인 명의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미성년후견인은 2018. 8. 31.까지 이 법원에서 실시하는 후견인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7.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부에 대한 이행명령 결정**



법률구조 2017-371

담당 : 진보라 변호사

사건명 : 이행명령

내용 : 신청인(여, 20세)과 피신청인(남, 21세)은 법률상 혼인한 사실은 없으나 슬하에 사건본인(남, 2세)을 두었으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에서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친생자임을 확인받은 바가 있다. 인지와 함께 신청인은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사건본인이 피신청인의 친생자임이 명백하므로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피신청인이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2017년 2월 14일부터 사건본인이 만 12세가 되기 전날인 2028년 8월 24일까지는 월 30만원씩을,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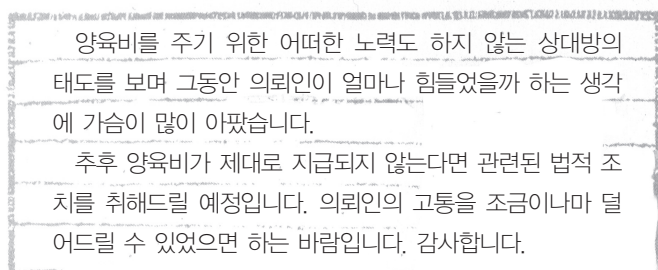
다음날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는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청인은 양육비심판 청구 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신청인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신청인은 더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을 미룰 수 없어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6. 12.)

1.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지원 2017.5.26. 선고 2016드단000 판결에 기한 의무의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2018. 5.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400만원을 이 명령이 고지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지급하라.

2.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다음은 소송구조 사건을 담당하였던 변호사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아내와 자녀를 폭행하고 게임에 중독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양육비 판결

법률구조 2017-486

담당 : 이혜민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등

내용 : 원고(여, 45세)와 피고(남, 47세)는 2009년 3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들(남, 13세, 9세, 여, 12세, 10세)을 두었다. 피고는 필리핀 국적의 원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할 때부터 게임만 하며 나태하게 생활하였다. 2009년경 원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계비 지원을 받았으나, 이마저도 피고가 게임으로 탕진하였다. 피고는 가끔 노동일을 하였지만 타인과 수시로 시비가 붙었고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물어주기도 하였다.

2014년경 원고는 사건본인들의 예방접종 예약시간이 다 되어 피고가 원하는 반찬을 차려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밥상을 엮고, 원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 동네주민이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원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는 공부방에 있는 첫째와 둘째 자녀를 찾아가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같은 해 10월경 피고가 취직을 하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여 원고는 고민 끝에 보호시설에서 퇴소하였다. 하지만 피고는 3개월 만에 일을 그만두었고, 예전과 같이 게임만 하는 등 나태한 생활을 계속하였다. 2017년 6월경 피고는 벨트로 첫째 자녀를 폭행하였다. 이어 다음 날 원고에게 젓가락을 던지고 소리를 질렀다. 시끄러운 소리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는 원고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때렸다. 원고는 경찰의 도움으로 보호시설에 다시 입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8. 7. 21.부터 2024. 8. 11.까지는 월 1,6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5. 12. 2.까지는 월 1,2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7. 6. 9.까지는 월 800,000원씩을, 그 다음날부터 2028. 10. 26.까지는 월 4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IMF로 인한 사업실패로 채무가 증대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18-60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남, 60세)은 1982년경 어머니를 여의고 23

세의 많지 않은 나이에 장남으로서 아버지와 어린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나 좌절하지 않고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며 살았다. 그러다 1989년경 아내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간 어렵게 모아둔 돈으로 중장비 사업을 시작하였다. 다행히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1993년경에는 건설용 골재를 생산하는 석산광산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었고, 건설업 경기가 좋아 사업이 아주 잘 되었다. 하지만 1997년경 IMF가 들이닥치면서 그간 납품하고 받은 어음들이 대부분 부도처리 되었고 신청인은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연쇄 부도를 당하였다. 집안의 기둥이었던 신청인이 무너지니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 극심한 독촉으로 인해 집을 나와 홀로 생활하면서 20년 가까이 가족과 생이별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신청인은 객지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근로활동을 하였지만, 소득이 70~80만 원에 불과해 채무상환까지 할 수 없었다. 현재 신청인은 일용직 사무실에서 알게 된 지인의 도움으로 무상거주하고 있으며 간헐적 일용근로를 통해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IMF로 인해 한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된 신청인은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18. 07. 24.)
채무자를 면책한다.

가출하여 30년 넘게 연락 두절된 남편과의 공시송달에 의한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18-111

담당 : 장철진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68세)와 피고(남, 70세)는 1977년 4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이다. 피고는 인쇄소 사업 실패로 사채업자들의 방문과 빚독촉에 시달렸다. 1982년 2월 피고는 가출하여 사흘 만에 귀가하더니 다시 가출하였다. 이후 3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에도 신고하고, 기도원과 사찰 등을 수소문 하였지만 피고의 행방

을 알 수 없었다. 피고가 가출한 뒤 원고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 채무만 늘어나 파산선고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18.7.20.)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지급되지 않은 과거양육비에 대한 부의 임금 채권압류 결정

법률구조 2018-238

담당 : 임채룡 변호사

사건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내용 : 채권자(여, 46)와 채무자(남, 48세)는 1997년 10월 혼인하여 슬하에 사건본인들(여 20세, 남 18세, 남 10세)을 두었지만, 채무자의 가정폭력과 도박으로 2014년 3월 재판상 이혼을 하였다.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채권자가 지정되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사건본인들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만 할 뿐 지급을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고 자녀들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하여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양육비금 70,000,000원을 지급받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8. 7. 23.)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조경애 법률구조 1부장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시달리는 비혼모자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 상담을 포함한 상담 그리고 쉽고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1박2일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18년 9월 28일(금) ~ 9월 29일(토)
- ▶ 대상 : 자녀를 동반한 비혼모 가족
- ▶ 장소 : 용인 에버랜드
- ▶ 내용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 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병원비 걱정 없이 자녀 키우기」

▷ 강의내용 :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결손처분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한 강의 및 상담

4.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5. 「용인 에버랜드 체험 활동」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 시청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 ~ 4시
(9월 10일)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2018년 9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 ▶ 일시 : 2018년 1월 ~ 12월 매월 넷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10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사 : 김병후 원장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정신건강의학과)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시	강 의 제 목
9월 27일	7. 외도에 대한 대처
11월 22일	8. 분노 조절 장애
12월 27일	9. 실제 부부사례로 살펴 본 치료상담

등지고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 ▶ 일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 ~ 5시 (※ 8월 휴강)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수시접수 가능)
- ▶ 강의 일정 및 주제

일 정	강 의 제 목	강 사
9월 13일	분 노 : 뜻대로 되지 않아 생기는 분노를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이서원 (한국분노관리 연구소 소장)
10월 11일	평 안 : 교통 속에서도 안정된 마음을 만드는 법을 배운다	
11월 8일	열등감 : 성장과 변화로 가는 에너지	정윤경 (연세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객원교수)
12월 13일	자존감 : '나는 나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장 소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8층 강의실(변경될수 있으므로 사전문의 요망)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EL : 02-782-3601 FAX :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E-mail : edu@lawhome.or.kr
트위터 : http://www.twitter.com/LegalAidCente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2박 3일 (1박 2일) 자녀동반 캠프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

등지교실

내 감정을 잘 느끼고 잘 전달하기 위해 점검하고(See), 해결하며(Solve), 유지할 수 있도록(Sustain) 돕는 교육강좌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공개강좌

—김병후 원장과 함께하는 부부갈등과 상처 다루기—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상처받은 관계를 힐링하기 위한 방법을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알아보는 공개강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 ☎ 대표전화 **1644-7077**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T. 02-780-5688~9 F. 02-780-0485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